

NEWSLETTER

June 2020

중국 그룹

China Practice Group

CONTACT



변호사 오승룡

T: 02.772.4329

E: seungryong.oh@leeko.com

외국변호사 최산운

T: 02.6386.6348

E: shanyun.cui@leeko.com

외국변호사 김운학

T: 02.2191.3243

E: yunhe.jin@leeko.com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4)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금융, 파산 등 민사분쟁사건의 재판실무에서 보다 정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0. 5. 19.에 <법에 따라 신종코로나전염병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할 약간의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2)>(关于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民事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二))>(이하 ‘사법해석(2)’)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0. 4. 24.자 뉴스레터에 이어서 위 사법해석(2)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들(이하 ‘현지법인’)이 운영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계약분쟁사건

사법해석(2)에서는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분쟁사건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의 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변경을 통하여 이익상 형평을 이루게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당사자가 대금, 이행기간 등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실제 상황과 공평원칙에 근거하여 그 조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계약 유형별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가. 물품매매계약

(1) 계약 목적의 실현과 계약 해지의 연동성 관련

당사자가 약정한 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이행원가가 증가하였으나,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계약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하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주문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또는 물품을 교부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매수인의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어서 매수인이 법원에 계약의 해지 및 이미 지급한 선금금 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여야 하고,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지 아니합니다.

(2) 가격 또는 이행기간의 조정 관련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지만, 인건비, 원자재, 물류 등 이행원가가 현저하게 증가되었거나 또는 제품가격이 크게 감소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하게 되는 상황 하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가격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사건의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가격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매도인이 약정한 기한에 물품을 교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매수인이 약정한 기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당사자가 이행기간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 사건의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이행기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격 또는 이행기간의 조정 등 방식을 통하여 계약을 변경한 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위약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지 아니합니다.

(3) 방역물품의 이중매매 관련

매도인이 매수인과 방역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타인에게 해당 방역물품을 고가로 판매하여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 하에서(즉, 매도인이 고액의 이윤을 취득하기 위하여 방역물품을 이중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이 취득한 이윤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법에 따라 방역물품을 전용하거나 또는 임시 징용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 하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부동산계약

(1) 부동산매매 관련

매도인이 아파트매매계약상 약정한 기한에 아파트를 교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매수인이 약정한 기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일방 당사자가 아파트매매계약의 해지 및 상대방 당사자의 위약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행기간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사건의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이행기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임대 관련

경영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후,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로 인하여 임차인의 자금흐름이 어렵게 되었거나 또는 영업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황 하에서, 임차인이 약정한 기한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동산임대계약의 해지 및 임차인의 위약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전시, 회의, 모회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예약한 임시장소에 관한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로 인하여 해당 활동이 취소되어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선금금 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유기업의 부동산을 임차하였거나 또는 정부, 대학교, 연구소 등 행정사업단위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서비스업종의 영세기업,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영이 어렵게 된 임차인이 국가 정책(즉,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서비스업종의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진일보 도와 건물 임대료 압력을 완화할 것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进一步帮扶服务业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缓解房租租金压力的指导意见)> 제2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상반기 3개월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에 따라 임대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면제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비국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임차인이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소득이 없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계속하여 원래의 임대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면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한 상황 하에서, 임차인이 임대료의 감면, 임대기간의 연장 또는 임대료의 지급을 연기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 임대계약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임대료 감면 정책(즉,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서비스업종의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진일보 도와 건물 임대료 압력을 완화할 것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进一步帮扶服务业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缓解房租租金压力的指导意见)> 제2조 제3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평등하게 협상하는 전제하에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임대료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에 따라 조정을 하도록 조율할 수 있고, 조정이 안되는 경우, 사건의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계약

수급인이 약정한 기일 내에 시공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위약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공사 기일을 연장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가 계약의 이행에 주는 영향을 참작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인건비, 자재비 등 원가가 대폭 인상되었거나 또는 수급인이 인건비, 설비 임대료 등 손실을 부담하고, 계속 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수급인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한 상황 하에서, 수급인이 대금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사건의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라. 오프라인교육계약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수 없지만, 온라인 교육, 교육 기간 변경 등 방식으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교육 접수당사자가 계약해지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자가 온라인 교육, 교육 기간 변경, 교육비용 조정 등 방식으로 오프라인교육을 계속 이행 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사건의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오프라인교육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한편,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수 없고, 온라인 교육방식을 통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거나 또는 실제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황 하에서, 교육 접수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제한이 있는 오프라인교육계약에서 교육 기간을 변경하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교육 접수 당사자가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여야 합니다.

2. 금융분쟁사건

사법해석(2)는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대출, 담보, 'VAM(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분쟁 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의 불리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와 해결방안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법원에서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또는 거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대출계약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 및 발전가능성은 있지만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의 영향을 받아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대출분쟁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중국인민은행 등 5개 부서에서 반포한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즉, <금융지원을 진일보 강화하여 코로나19 감염 폐렴 전염병을 방역 및 통제할 것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强化金融支持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的通知)>에서 규정한 금융지원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이 위 금융지원정책을 위반하여 제기한 대출기한 만기 도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청구에 대하여 인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담보계약

방역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등 동산에 설정한 부동저당권과 관련하여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법원에 담보물권의 실현을 신청한 경우, 피신청자(즉, 위 생산기업)가 담보물권의 실현으로 인하여 방역물자의 생산경영이 위협해 질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의 영향이 해소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VAM(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계약

도소매, 숙박, 요식, 물류운송, 문화관광 등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의 영향을 엄중하게 받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주주, 실제지배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발생한 VAM계약분쟁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가 대상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의의 이루지 못하고, 약정한 실적기준 또는 실적보상금액에 따라 VAM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합니다.

3. 기업파산분쟁사건

사법해석(2)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이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로 인하여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여야 하고, 채무 분할 지급, 채무이행기간 연장, 계약 대금 변경 등 방식을 통하여 파산신청원인을 해소하거나 또는 구조조정, 예비 중정 등 방식을 통하여 기업이 채무위기를 해소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기업의 파산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의 어려움이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4. 현지법인 유의사항

현지법인은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로 인한 계약분쟁에 대응할 경우, 우선 계약 기간 연장, 계약 대금 변경, 계약 해지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 중 계약 해지 방안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반드시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계약 조건의 변경 청구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익상 형평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 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법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계약의 기간이 만기되었으나,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로 인하여 현지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대출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 현지법인은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지법인은 경영 악화와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업의 파산 신청을 접수할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현지법인이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파산에 이른 사정이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 신청을 제기하여 파산을 피하고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파산의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뉴스레터 더 보기

COVID-19 자료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우 04532) | Tel: 02-772-4000 | Fax: 02-772-4001/2 | www.leeko.com